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에 있어 항공은 2세 미만, 선박은 6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령 기준을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6세 미만으로 통일하여 부담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 중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를 “6세”
로 한다.

제2조(「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2세”를 “6세”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
행령」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2호 중 “2세(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6세)”를
“6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u>2세</u>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u>6세</u>) 미만인 어린이 3. ~ 8. (생 략) ② (생 략)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6세</u> 미만인 어린이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 등)	제2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 등)
①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2세</u> 미만인 어린이	2. <u>6세</u> 미만인 어린이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2세(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6세)</u> 미만인 어린이	2. <u>6세</u> 미만인 어린이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821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846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18